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신복자 의원 외 35명

나. 의안번호 : 제 813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2. 제안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인접한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건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 건물주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.
- 이에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서울시가 위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안전과 원활한 통행 및 건물주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조항에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

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신설함(안
제8조제2항제2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생략)	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위치부적정 시설물	2. -----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</u>
마. (생략)	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- 건물 공사 등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등의 사유로 보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

「도로법」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「도로법」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.

「도로법」 제62조(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(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)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(이하 “도로점용허가”라 한다)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8조(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)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 - 가. 안전울타리,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
 - 나.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(信號員)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
2. 공사용 자재,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,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.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,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
 - 가. 가로수, 전봇대 등 지장물(支障物)
 - 나. 통신관로,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
 - 다. 가드레일,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(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)
4.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
 - 가. 속도저감시설, 횡단시설, 교통안내시설,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
 - 나. 시선유도시설, 방호울타리, 조명시설,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
 - 다.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

- 보도와 근접한 건설공사장 인근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한 경우, 공사 관계자가 법령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협소해져 의도치 않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, 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위치 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,
-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이전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다만,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동 조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운영자가 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된 위치에 조례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,

- 인접한 건물이 공사중에 있어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 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,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.
- 따라서,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, 이전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원위치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]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(안)
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</u>	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. 다만,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</u>

<p>마. (생략) ③ (생략)</p>	<p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</u> <u>요인이 해소된 경우에</u> <u>는 원위치 할 수 있다.</u> 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